

---

#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일원화 방안 검토

---

2017. 8.

서울교통공사  
건 축 처

#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일원화 방안 검토

- 시특법 개정(11.11.16.)으로 시행중인 건축시설물 정밀점검을 통합 전, 양 공사가 상이하게 운영하였으나 (※ 1~4호선: 자체점검, 5~8호선: 외부 전문기관 용역)
- 통합 후 일원화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**자체 점검중인 1~4호선 구간의 정밀점검을 5~8호선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시행으로** 점검의 내실화 및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1 추진경위
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(안전점검의 실시) : '11.11.16 개정
  -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 13조에 따른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
- 서울시 감사결과 질문서 통보 : '16.7.1(감사실-2919호)
  - 철도역사(2종 시설물) 안전점검 : 정밀점검을 부적절하게 시행(등급산정의 오류 및 정밀점검 기준수량 미 충족)
- '17년 1/4분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제출 : '17.4.4(건축사업소-3186호)
  - 안전 : 시특법 정밀점검 외부용역 추진 → 양 공사 통합 후 검토
- 정밀점검용역 시행관련 일상감사 의견 : '17.7.5(건축2사업소-851호)
  - '18년도 계획 시 1~4호선까지 포함하여 정밀점검 용역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실행 필요

## 2 점검현황

- 정밀점검 대상 (1~4호선)

구 분	시특법 개정 전	시특법 개정 후
토목분야	1~4호선 119역	승강장 및 터널구간
건축분야	2개 차량기지(신정, 지축)	대합실(119역) 및 2개 차량기지(신정, 지축)

※ 충무로③역은 대합실이 없는 구조(충무로④역 대합실 하부 위치)로 역수에서 제외

○ 구, 양공사 정밀점검 방법

구 분	1~4호선	5~8호선
점검방법	<b>직원 자체점검</b>	<b>외부 전문기관 용역 시행</b>
점검내용	119억 2기지(1,2종 시설물)	157억(2종 시설물)
점검주기	·A등급 : 4년    ·B,C등급 : 3년    ·D,E등급 : 2년	

### 3 문제점

○ 자체점검 기술 한계 및 전문성 부족

- 시특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점검 기술력, 점검기간, 필요인원 및 장비 부족
- “시특법”과 관련된 점검을 전담하는 직원이 아닌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점검 업무를 병행
- 정밀점검에 대한 기술력, 전문성, 경험부족으로 법적요구 수준의 점검한계  
⇒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어려움

○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전문성 결여

### 4 개선방안

○ 정밀점검 시행방안 일원화 ⇨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시행

- 시행시기 : ‘18년부터 년차별 추진
- 점검대상 : 1~4호선 119억 2개 차량기지(1,2종 121개 시설물)
- 소요예산 : 1,200백만 원
- 연차별 소요금액 (단위 : 백만 원)

구분	합계	‘18년	‘19년	‘20~‘21년
사업비	1,200	100	700	400
물량	119억 2개기지	12억	72억 1개기지	35억 1개기지

※ 5~8호선 : 2017년 하반기까지 157개 모든 역사의 정밀점검을 외부전문기관 용역 시행으로 완료 예정

## 5

## 결론 및 건의

- 시특법 개정('11.11.16.)으로 1~8호선 276개 역 및 2개 차량기지 각종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, 구. 양 공사의 점검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일원화가 필요하며  
(※1~4호선 : 직원 자체 점검, 5~8호선 :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시행)
- 1~4호선 구간의 자체 정밀점검은 기존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정기점검 업무와 병행으로 점검인원 및 정밀점검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법적요구 수준의 정밀점검 한계가 있어 **2018년 부터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시행**으로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점검의 내실화 및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붙임 : 건축분야 정밀점검 비용 산출 1부. 끝.